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의자 : 서영교 · 박희승 · 임오경

윤준병 · 위성곤 · 양부남

김문수 · 이성윤 · 박홍배

김태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업용 토지, 축사용지, 영농자녀 증여 토지,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증여세, 양도소득세,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, 경쟁력 제고, 식량안보 확보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나, 대부분의 감면 · 비과세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심화, 생산비 상승,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됨.

이에 양도소득세 · 증여세 감면, 법인세 과세특례, 농어가목돈마련처 축 이자소득 비과세, 조합예탁금 저율과세,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,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의2, 제69조의3, 제71조, 제72조, 제87조의2, 제88조의5, 제89조의3, 제99조의4, 제105조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29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,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월 1일부터 2028

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





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억 원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 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“당기순이익과세”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8. (생 략)

## ② ~ ⑥ (생 략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

## 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





